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문화유산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.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서는 도시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, 장사시설인 묘지는 묘지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국토교통부훈령인

「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」을 준용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가 역사공원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○ 이에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

‘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’에 문화유산인 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를 추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의 역사공원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○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문화재로 지정된 묘지의 역사공원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